

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19-25 |
|----------|---------|

| | |
|-----|------|
| 제출자 | 거창군수 |
|-----|------|

1. 제안 이유

이 조례에 따른 기업의 지원기준 중 하나인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하여 승강기산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시고용인원 증명 근거를 변경함(안 제2조제13호가목)

- 1) 기업체에서 제출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서로 변경
- 2)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사항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4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1. 28.~2. 18.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나목·다목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3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「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. 다만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.

가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12. (생략)</p> <p>13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.</p> <p>가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</p> <p>나.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<u>자</u>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</p> <p>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(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<u>자</u>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“상시고용인원”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인원으로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. 다만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.</p> <p>가.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</p> <p>나.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(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<u>사람</u>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</p> <p>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른 보험료(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)의 납부가 증명된 <u>사람</u>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</p> |